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 외 27명
- 나. 의안번호 : 제 3488 호
- 다. 발의일자 : 2026. 02. 09
- 라. 회부일자 : 2026. 02. 12

2.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독가스, 트라우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 지원 근거와 제외 조건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시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6. 02. 20.~02. 24.)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노출된 각종 유해요인으로 인해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퇴직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 목 차 | 주 요 내 용 |
|---------------------------|---|
| 안 제1조 (목적) | ·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안 제2조 (정의) | ·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의 용어 정의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함. 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 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함. |
| 안 제3조 (지원 등) | · 시장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은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 안 제4조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 ·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고 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함. ·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 |
|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 | · 시장에게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현황 및 건강관리 실태

- 2026년 1월 기준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은 총 7,434명 (정원 7,436명)으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활동 중임.([표 2] 참조)

[표 2] 2026년 1월 기준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단위 : 명)

| 구분 | 소방공무원 | | | | | | | | | | |
|----|-------|-------|------|------|-----|-----|-----|-------|-------|-------|-------|
| | 계급별 | 합계 | 소방장감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전체 | 정원 | 7,436 | 1 | 6 | 33 | 203 | 434 | 582 | 833 | 1,797 | 3,547 |
| | 현원 | 7,434 | 1 | 5 | 33 | 203 | 824 | 1,977 | 1,990 | 1,356 | 1,045 |

- 이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및 분진, 소음, 고열 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교대와 긴급 출동 등에 따른 업무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높은 직무환경에 놓여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하는 폐암, 방광암, 중피종 등을 직업성 암으로 규정¹⁾하고 소방 직무와 특정 질환 간의 연관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181호) Ⅲ.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3. 직업성 암

가.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 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라.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마.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바.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성골수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등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18개 의료기관³⁾을 통해 11개 분야 168개 항목으로 구성된 특수건강진단(〔붙임〕 참조)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5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건강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혈액검사 이상소견, 난청 등 직무 환경과 밀접한 건강 문제가 주요 소견으로 확인됨.(〔표 3〕 참조)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소재지) : 18개소**

: 하나로의료재단(종로구 1, 강남구 1), 한국의학연구소(종로구 1, 영등포구 1, 강남구 1), 소중한메디케어의원(금천구), 우리원헬스케어(중구), 강남고려병원(관악구), 다운헬스케어의원(송파구), 양지병원(관악구), 서울병원(송파구), 한신메디피아(서초구), 영등포병원(영등포구), 서울DMC건강의원(마포구), 미래의료재단(강남구), 참튼튼병원(구로구), 서울중앙메디컬센터(중구), 구로성심병원(구로구)

[표 3]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운영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대 상 : 7,436명 * 공로연수자, 휴직자, 신규임용자 추가
- 검진항목 : 특수건강진단 11개 분야 168개 항목
- 예 산 : 총 4,089,800천원(1인당 550천원)
- 최근 5년 건강검진 현황

(단위:명,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검진대상자 | 7,673 | 7,613 | 7,549 | 7,343 | 7,225 |
| 이상소견(%) | 6,128(79.9) | 6,011(78.9) | 5,736(75.9) | 5,559(75.7) | 5,565(77) |

- 연도별 질병(유소견) 순위

(단위:명, %)

| 검진결과 \ 연도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이상지질혈증 | ① 4,031(32.2%) | ① 3,579(29.0%) | ① 3,234(28.7%) | ① 2,904(26.8%) | ① 3,167(28.6%) |
| 고혈압 | ② 1,748(13.9%) | ② 1,734(14.0%) | ② 1,419(12.6%) | ⑤ 1,009(9.3%) | ⑤ 1,106(10.0%) |
| 혈액검사 이상소견 | ③ 1,431(11.4%) | ④ 1,249(10.1%) | ④ 1,218(10.8%) | ③ 1,238(11.4%) | ③ 1,287(11.6%) |
| 당뇨 | ④ 1,274(10.2%) | ③ 1,271(10.3%) | ⑤ 1,007(9.0%) | ④ 1,170(10.8%) | ② 1,317(11.9%) |
| 난청 | ⑤ 1,251(10.0%) | ⑤ 1,222(9.9%) | ③ 1,291(11.5%) | ② 1,385(12.8%) | ④ 1,261(11.4%) |

- (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 구분 | | 진단시기 |
|------------|-----------|---|
| 특수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 | 정기건강진단 | 연 1회 |
| | 수시건강진단 | 위험 노출 혹은 작업 관련 증상 발생 시 |
| 정밀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정기, 수시) 후 직업성 관련 증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 이러한 결과는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유해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이 실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겠음.

- 다만, 현행 제도는 재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직 중 노출된 유해 요인의 영향이 잠복기를 거쳐 시차를 두고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제한적인 실정이라 하겠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재직 중 시행되는 특수건강진단 체계를 퇴직 이후까지 일정 기간 연계하여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로, 퇴직 후 10년간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96호,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⁴⁾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경북도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표 4] 참조)하고 있는 등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표 4] 전국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현황

| 시·도 | 조례명 | 제·개정시기 | | 지원기간 |
|-----|---------------------------|--------|----------|--|
| 경북 |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정 | 25.7.14. | 제3조(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 충북 |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정 | 25.10.2. | 제3조(지원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96호,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4.10.31. 제안, 2024.11.1. 회부) :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의2 신설

| | | | |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정 | 25.12.31. |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 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 창원 |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 | 제정 | 25.12.31. | 제3조(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한 해당 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 부산 |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정 | 25.12.31. |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 충남 |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 25.9.30. | 제3조(지원 등) ② 제항에 따른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정 | 25.12.12. |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 이내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 광주 |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 개정 | 25.7.18. | 제15조(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제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개정 | 25.12.15. | 제8조(소방공무원 등의 특수건강진단)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는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 “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퇴직소방공무원”을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수혜 대상을 서울시 소속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또한, 지원 대상에 공무상 재해로 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한 것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서 소방공무원의 주요 직업성 암인 폐암, 방광암 등에 대하여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가 공무상 질병 추정의 핵심 요건으로 명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직무상 유해요인에 대한 장기간 누적 노출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는 “건강진단기관”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⁵⁾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⁶⁾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6)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제3호는 “특수건강진단”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⁷⁾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범위와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개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 중인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인프라 및 검진 항목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조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나. 지원 등(안 제3조)

- 안 제3조(지원 등)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기간과 비용 지원 근거,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질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제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 먼저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건강 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직 시의 특수건강진단 체계를 사후 10년까지 연장 적용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가능케 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 하겠으며,
- 이에 필요한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검진 참여율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안 제3조제3항은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

호8)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은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이는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성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중대 비위로 인해 퇴직한 자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행정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안 제4조)

- 안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시행 주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먼저, 안 제4조제1항은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신청서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결과 활용 동의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지원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은 시장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대상자의 ‘선정 - 검진실시 - 결과통보’로 이어지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개인 건강정보 라는 민감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사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방지한 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여겨짐.
- 끝으로, 안 제4조제4항에서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향후 퇴직 인원 누적에 따른 재정 부담과 행정·운영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일례로, 향후 10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인원을 고 려하여 ‘연간’ 또는 ‘격년’ 단위로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55만원 기준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할 경우 10년간 약 58억원 수준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반면, 격년 실시 시 약 32억원 수준으로 시행 주기에 따라 재정 부담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표 5] 참조)

[표 5] 향후 10년간(2027년~2036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원 및 비용 추계
(1인당 55만원 기준, 연간·격년 지원 비교) (단위:명, 천원)

|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계 | |
|--------------------|------------------|--------|---------|---------|---------|---------|---------|---------|---------|---------|---------|-----------|
| 퇴직자(명) *정년퇴직 기준 | 148 | 241 | 218 | 272 | 272 | 207 | 178 | 171 | 143 | 128 | 1,978 | |
| 연간 지원시 | 누적 인원 (명) | 148 | 389 | 607 | 879 | 1,151 | 1,358 | 1,536 | 1,707 | 1,850 | 1,978 | 11,603 |
| | 누적 예산 (천원) | 74,000 | 194,500 | 303,500 | 439,500 | 575,500 | 679,000 | 768,000 | 853,500 | 925,000 | 989,000 | 5,801,500 |
| 격년 지원시 | 격년 인원 (명) | 148 | 241 | 366 | 513 | 638 | 720 | 816 | 891 | 959 | 1019 | 6,311 |
| | 격년 예산 (천원) | 74,000 | 194,500 | 183,000 | 256,500 | 319,000 | 360,000 | 408,000 | 445,500 | 479,500 | 509,500 | 3,229,500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시장에게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이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이 건강진단을 통한 검진 시행뿐만 아니라 대상자 관리, 사후 건강관리, 직업성 질환 추적 및 정책 연계 등 다양한 행정·의료 주체의 협력이 요구됨에 따른 조치로 이해됨.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평상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소방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유해요인의 장기적 영향에 대응하고 기존 제도상 사후 건강관리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겪게 될 막연한 건강상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고 선도적인 보건복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크다 하겠음.

- 다만, 군인, 경찰 등 유사 위험 직군의 경우 퇴직 이후 건강진단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유사 직군 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방업무 특유의 고위험 환경과 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타당성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행 주기의 탄력적 운영 등 제도의 안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특수건강진단 검진 항목(11개 분야 168개 항목)

[붙임] 특수건강진단 검진 항목(11개 분야 168개 항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별표 2] 참조)

| 유해인자 | 검사항목 | 비고 |
|------------------------------|---|---|
| 기본 검진 | 신장, 체중, 복부둘레, 시력, 문진(특수건강진단 문진표, 직무 문진표, 암검진 문진표), 상담 및 진찰 | |
| 분진 | 흉부 X-ray, 폐기능검사, 저선량 폐 CT | |
| 소음 | 순음청력검사(0.5-8.0 kHz), 고막운동성검사* | *청력역치 0.5-2 kHz에서 30 dB 이상 또는 3-8 kHz에서 40 dB 이상인 경우 실시 |
| 야간작업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 수면장애 문진 및 상담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측정값) 당화혈색소, 심전도*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또는 심장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40세 이상, 매년 **50, 55, 60세 각 1회 |
| 근골격계 유해요인 | 어깨, 요추 근골격계 증상 문진 및 상담* 경추, 요추, 어깨, 무릎 MRI** | *45, 55세 **40,50,60세, 1부위 선택 |
| 생물학적 요인 | 간기능 검사(GOT, GPT, γ-GTP), 간 초음파, 알파태아단백, C형간염 (anti-HCV), 매독(VDRL or RPR) | |
| 유기화합물 (벤젠)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 검사 ¹⁾ | |
| 중금속(납)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 검사 ¹⁾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 10종 ²⁾ 혈중 납 | |
| 중금속 (카드뮴) | 흉부 X-ray, 폐기능검사, 저선량 폐 CT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 10종 ²⁾ 혈중 카드뮴 | |
| 암발생 위험 (암 검진) | · 위암 : 위내시경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
|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 대장암 : 40세 이상, 매년 (대장내시경 5년 주기) |
| | · 자궁경부암(여성) : 자궁경부 세포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2년 주기 |
| | · 간암 : 간 초음파, 알파태아단백(AFP)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매년 (B-C형 간염, 간병변) |
| | · 유방암(여성) :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 유방암 : 40세 이상, 2년 주기 |
| | · 혈액암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 혈액암 : 매년 |
| | · 폐암 : 저선량 폐 CT | 폐암 : 50세 이상, 2년 주기 |
| | · 전립선암(남성) : 전립선특이항원(PSA) | 전립선암 : 50세 이상 |
| · 암 검진 문진 | | |
| 정신건강 | 정신건강 및 직무 스트레스 체크리스트 ³⁾ | 정신건강 설문조사로 같음 (단, 필요 시 진행) |

¹⁾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적혈구용적률, 평균적혈구용적(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CHC), 혈소판분포계수(PDW), 혈소판용적률 (PCT), 평균혈소판용적(MPV), 적혈구분포계수(RDW), 호중구·림프구·단핵구·호산구·호염기구 비율

²⁾요비중, pH, 요단백, 요당, 요잠혈, 요케톤, 백혈구, 아질산염, 유로빌리노겐, 빌리루빈

³⁾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체크리스트 : 매년 정신건강 설문조사의 형태로 건강진단과 별도로 진행함.